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」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 재 국

2026년 4월 29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 113 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

일부개정내규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4(고졸채용) 중 2항 및 7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② 공사는 고졸적합직무를 발굴하고 고졸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하여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고졸적합직무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.
⑦ 고졸 전형 채용으로 임용된 경우 다른 직원과 승진, 급여 등 제도 운영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.

제6조(출제수준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직원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각 직렬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 수준으로 한다.

제21조(승진후보자 명부작성) 중 4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있어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일반직 3급은 최근 3년, 일반직 4급~7급 및 일반직 9급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.

제22조(직원의 승진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인사규정 제25조에 의하여 직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직원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(다만, 6급으로의 승진의 경우와 8급으로의 승진의 경우 승진 예정 인원)에 대하여 “별표 2-2”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직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한다.
제5조(필기시험 과목 및 가산점수) 중 ‘별표1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1]

직원 신규채용 시험과목

직 종	1차시험	2차시험	비 고
일반직	NCS직업기초능력 (의사소통능력,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, 직업윤리)	NCS 기반 구조화 면접	직무수행능력 (전공평가), 실기시험 병행 가능

※ 인사위원회 심의/의결을 거쳐 시험과목 변경(추가) 가능

제5조(필기시험 과목 및 가산점수) 중 ‘별표2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2]

직원 신규채용 시험 가산점수(제5조 관련)

구 분	세 분	가산점수	비 고
국가유공자 (취업지원대상자)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름 ※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 부여 세부방법은 국가보훈부「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」을 따른다.		
자격(면허) 소지자	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기술사, 법무사, 노무사	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%	
	행정사, 기사(산업기사 제외)	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%	

1. ※ 단, 채용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보유자에 한하며 구체적인 자격(면허) 사항은 채용 계획 수립 및 인사위원회 심의·의결하여 정함. 또한, 가점 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종에 한함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. 5. 1.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 장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곽 성 우
	직 위 성 명	혁 신 기 획 팀 장 신 재 두
	담당자 성명 (전 화)	현 진 환 (3 9 0 - 7 6 4 1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의4(고졸채용) ② 공사는 고졸적합직무를 발굴하고 고졸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하여 일반직 또는 업무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고졸적합직무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. ⑦ 고졸채용 임용자가 일반직 또는 업무직으로 임용된 경우 다른 일반직, 업무직들과 승진, 급여 등 제도 운영에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.	**제3조의4(고졸채용)** ② ---------- ---------- ---일반직으로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. ⑦ 고졸 전형 채용으로 임용된 경우 다른 직원과 ---------- ----------.
제6조(출제수준) 직원채용시험의 출제수준은 각 직군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수준으로 한다.	**제6조(출제수준)** ---------- 각 직렬별 ---------- --------.
제21조(승진후보자 명부작성)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있어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작성 기준일부터 일반직 3급은 최근 3년, 일반직 4급~7급은 최근 2년 이내에 당해 직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.	**제21조(승진후보자 명부작성)** ④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, 일반직 4급~7급 및 일반직 9급은 최근 2년 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.
제22조(직원의 승진) 인사규정 제25조에 의하여 직원을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직원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2-1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 있는 직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한다.	**제22조(직원의 승진)**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결원의 수(다만, 6급으로의 승진의 경우와 8급으로의 승진의 경우 승진 예정인원)에 대하여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
현 행

[별표 1]

직원 신규채용 시험과목

직 종	1차시험	2차시험	비 고
일반직	NCS직업기초능력 (의사소통능력,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, 직업윤리)	NCS 기반 구조화 면접	직무수행능력 (전공평가), 실기시험 병행 가능
업무직	NCS직업기초능력 (의사소통능력, 조직이해능력, 직업윤리)		

※ 인사위원회 심의/의결을 거쳐 시험과목 변경(추가) 가능

개 정 안

[별표 1]

직원 신규채용 시험과목

직 종	1차시험	2차시험	비 고
일반직	NCS직업기초능력 (의사소통능력, 조직이해능력 문제해결능력, 자원관리능력, 직업윤리)	NCS 기반 구조화 면접	직무수행능력 (전공평가), 실기시험 병행 가능

※ 인사위원회 심의/의결을 거쳐 시험과목 변경(추가) 가능

현 행

[별표 2]

직원 신규채용 시험 가산점수(제5조 관련)

구 분	세 분	가산점수	비 고
국가유공자 (취업지원대상자)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름 ※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 부여 세부방법은 국가보훈부「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」을 따른다.		
자격(면허) 소지자	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기술사, 법무사, 노무사	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%	
	행정사, 기사(산업기사 제외)	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%	

※ 가점 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종에 한함

개 정 안

[별표 2]

직원 신규채용 시험 가산점수(제5조 관련)

구 분	세 분	가산점수	비 고
국가유공자 (취업지원대상자)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지침 등에 따름 ※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 부여 세부방법은 국가보훈부「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」을 따른다.		
자격(면허) 소지자	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, 감정평가사, 기술사, 법무사, 노무사	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5%	
	행정사, 기사(산업기사 제외)	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3%	

※ 단, 채용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보유자에 한하며 구체적인 자격(면허) 사항은 채용 계획 수립 및 인사위원회 심의·의결하여 정함. 또한, 가점 항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종에 한함.